

지적/발달장애인과 법집행기관 간의 상호 작용 개선에 관한 SB 882 자문 위원회

보고서

2026년 4월

요약 보고서

요약 보고서

지적/발달장애인과 법집행기관 간의 상호 작용 개선에 관한 SB 882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상원 법안 제 882호(2021-2022)(SB 882)에 따라 본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SB 882 법안에 따라 '지적/발달장애인 커뮤니티'와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과의 상호 작용에 특화된 치안관 대상 기존 교육을 평가하고 해당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법집행기관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개인 또는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권고안을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SB 882 법안은 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캘리포니아 법무부(DOJ) 담당자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4월 15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2년 동안 13차례 회의를 열고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 법집행기관 대표, 연구원, 서비스 제공자, 법률 및 기타 전문가 등 총 38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기존 교육 및 연구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는 교육 유형 및 효과, 위기 대응 모델, 정신건강 문제 또는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돌봄체계 및 기타 관련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DOJ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 중인 교육에 대한 정보와 해당 교육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경험 및 소감을 공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개발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주 전역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문제 및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과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교육을 참관하고, 교육의 특징과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여러 기준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주제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법집행기관과 정신건강 문제 및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협력했습니다.

배경: 본 보고서는 위원회의 권고안 개발과 관련된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 또는 지적/발달장애 관련 위기에 대한 주요 대응자로서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형성되어 온 역사적 경향, 법집행기관과 정신건강 문제 및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 빈도 및 결과에 관한 통계 및 연구, 해당 개인의 권리, 그리고 법집행기관과의 접촉 이후 영향을 받은 시민을 관련 서비스에 연계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돌봄체계 개요가 포함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나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법집행기관과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접촉 상황에서 물리력을 경험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연계될 수 있는 돌봄체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부 개인은 해당 서비스 이용에 장벽이나 공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 모델 및 시스템 차원의 개입: 위원회는 치안관의 다양한 참여 수준별로 다양한 위기 대응 모델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다른 관할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기 대응 모델 및 기타 시스템적 개입에 대한 개요와 이러한 모델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관할 구역마다 위기 대응 모델이 서로 다르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 교육을 받은 치안관이 참여하는 위기 개입팀(CIT) 모델, 치안관과 임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최초 대응팀 모델, 또는 임상 전문가, 동료 전문가,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의 대응팀 모델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모델의 존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효과성을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장애인에 대한 체포 및 물리력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 대응 모델은 치안관이 단독 대응할 때보다 커뮤니티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CIT나 대안적인 상호 작용 모델을 사용하는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연계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고서의 해당 섹션에서는 파견 시스템 및 동료 전문가 지원 등 위기 대응의 기타 요소들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교육: 위원회는 정신건강 문제나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과 관련된 법 집행 교육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가능한 교육 유형, 훈련 방식 및 훈련의 효과도 포함됩니다. 위기 대응 모델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유형과 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 집행 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법집행기관 간의 상호 작용에서 구체적인 요소의 개선과 교육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위원회의 문헌 검토, 교육 관찰 및 법집행기관 설문조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역할극이나 현실적 시뮬레이션과 같은 능동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교육의 경우 학습 도구로서 더 높은 참여도와 하급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집행기관은 가상 현실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지적/발달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교육은 커뮤니티 구성원과 치안관 모두에게 특히 높은 효과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치안관을 더 잘 이해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 및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위원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 수준, 교육을 개선하려는 요구,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애초에 그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근거 사이에서의 긴장을 마주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발전 중인 연구 분야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적용될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집행기관과 정신건강 문제 및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주의회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법집행기관,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유망 사례를 식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돌봄체계에 대응하고,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반영하며, 제안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개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권고가 포함됩니다.

SB 882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아래 및 각 장의 말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캘리포니아주 의회 및 지방 정책입안자들은 정신건강 문제 및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 포함)을 위한 통합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입법자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안전을 향상시키며, 주정부가 공감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선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과제가 필수적입니다.

- **지적/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개인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포함시키고**, 특히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복합적 요구를 가진 개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개인 중심 계획을 우선시하여** 각 개인의 고유한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돌봄체계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복합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평생에 걸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여** 불안정 및 위기를 초래하는 격차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이 적시에 적절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복합적 요구를 해결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SB 882 대상 집단, 치안관 및 지역사회 전반에 가장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개입에 자원이 활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집단에 특화된 전문 위기 대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치안관이 공공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입법자는 보다 대응성 있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측정 가능한 건강 성과를 창출하고 가족을 강화하며 공공안전을 증진하고 비용이 높은 긴급 개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입법적 리더십, 재정적 책임성, 그리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복지에 대한 책무를 보여줄 것입니다.

데이터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 연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현 위원회가 2026년 4월 해산됨에 따라, 위원회는 프로그램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직위를 마련할 것을 주의회에 권고합니다. 프로그램의 성공 평가는 SB 882 대상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치안관 교육이 해당 집단의 경험 개선에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와, 상기 권고된 기타 개입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구조 또는 직위에는 지속적인 인력 및 비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 보고의 책임 주체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조 또는 직위를 주정부 기관 또는 대학(예: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보건의료서비스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공중보건국))에 두는 것을 권고합니다.¹
 - 이러한 구조 또는 직위는 향후 의무화될 사항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감독하고, 연구자가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의 확대 시행 여부(주 전역 또는 기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개발 모델도 동일한 수준의 비용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권고합니다.
 - 시범사업 또는 기타 연구사업에는 적절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 요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그룹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사안에 적합한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 수집 계획은 잠재적 실패 지점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식별하기 위하여 실제의 도전적인 환경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 시범사업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관한 연구 및 분석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연구팀 구성원은 다양한 인구집단 및 지역에 걸쳐 기존 설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정신건강 및 중독서비스부의 지원을 받아 Northeast Ohio Medical University(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과대학)에 설치된 Ohio Criminal Justice Coordinating Center of Excellence(오하이오 형사 사법 공조 우수 센터)가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주 전역의 학습을 조정해 왔으며, 주 전역의 CIT 프로그램의 시행 및 발전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과대학, 공조 우수센터 웹사이트: <https://www.neomed.edu/cjccoe/about/>.

- 위원회는 주의회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연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구조 또는 직위의 감독 하에 수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신고를 분류하는 기관이 시행한 대응 모델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새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실의 대응 모델에서는 파견요원이 어떤 신고에 법집행기관의 대응이 필요한지, 또는 법집행기관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예: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요원은 소방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지방정부(예: 신호등 고장),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등에 연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완전 철수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법집행기관을 검토합니다(잠재적 우수 사례: 교육 참조).
 -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효과성을 연구합니다(잠재적 우수 사례: 위기 대응 모델 및 시스템 개입 참조).
- 이러한 상호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위한 중앙의 대외 공개형 저장소를 지정하되,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보다는 공중보건 관련 기관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저장소는 상기 설명한 지속적 연구를 위한 구조 또는 직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로 하여금 AB 1506(비무장 민간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찰관 관련 총기사건)에 따라 검토된 사건 중, IDD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정책, 교육 또는 관행 변경의 효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요 성공지표에 관한 지속적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SB 882 대상 집단과 관련된 법집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가 감소합니다.
 - 2015년 인종 및 정체성 프로파일링법 관련 연례 데이터를 평가하여 SB 882 대상 집단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 기관으로 하여금 물리력 행사 보고 체계에서 SB 882 대상 집단과의 접촉에 관한 인지되거나 보고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 교육, 정책 또는 관행 변경 이후 물리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연구/분석 요소를 포함합니다. 연구팀 구성원은 다양한 인구집단 및 지역에 걸친 기준 설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법집행기관과의 상호작용 결과 지원 서비스로의 의뢰가 증가합니다.
 - 가장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보고 요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을 구성합니다. 이는 법집행기관과의 경험에 관한 지역사회 내 독립적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의 잠재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연구/분석 요소를 포함합니다. 연구팀 구성원은 해당 지역의 가용 서비스와 다양한 인구집단 및 지역에 걸친 기준 설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법집행기관과 SB 882 대상 집단 간의 신뢰 및 관계를 구축하고, 해당 집단과 그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가 법집행 대응을 대체할 수 있는 개입에 관한 이해를 제고합니다.
 - SB 882 대상 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격차를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 측정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설정할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을 구성합니다. 이는 해당 지식의 보급 수준에 관한 지역사회 내 독립적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 법집행기관과 SB 882 대상 집단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잠재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연구/분석 요소를 포함합니다. 연구팀 구성원은 다양한 인구집단 및 지역에 걸쳐 기존 설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자를 참여시켜 현재의 데이터 수집 체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대안적 체계가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상기한 성공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치안관은 종종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데이터 수집 계획은 잠재적 실패 지점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식별하기 위하여 실제의 도전적인 환경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권고사항: 위기 대응 모델 및 기타 시스템 개입

- 법집행기관, 지역센터, 카운티 행동건강 부서 및 그 위탁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을 조사하고 식별합니다. 행동건강 위기 대응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격 취득 및 채용 경로 구축에 투자합니다. 그 예로,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로 접근 및 정보국이 보건 및 행동건강 분야 종사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운영하는 학자금 상환, 장학금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Prop 1(발의안 제1호, 2024년) 및 Behavioral Health Continuum Infrastructure Program(행동건강 연속성 인프라 프로그램, BHCIPI)의 지원을 받는 모든 신규 시설에 대하여, 지적/발달장애(IDD)에 대응 가능한 행동건강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Prop 1 및 BHCIPI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행동건강 치료시설이 IDD와 행동건강 문제를 동시에 가진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Prop 1 및 BHCIPI는 주 전역에 최소 6,800개에서 11,150개의 신규 주거형 치료 병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동건강 수용능력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형평성과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모든 보조금 수혜자 및 허가된 운영자에 대하여 IDD 대응 역량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시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폐/IDD 및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가진 개인을 수용하고, 연방 및 주 민권법에 따라 장애만을 이유로 한 배제를 금지합니다.
 - 자폐/IDD가 있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입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의사소통 지원, 감각 인지 기반 위기 대응, 긍정적 행동 전략 및 긴장 완화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감각 조절 및 행동 안정화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적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역센터, 카운티 행동건강 부서 및 기타 장애인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 IDD 대응 역량 요건을 재정 지원 협약, 인허가 조건 및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 DHCS)의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하여, Prop 1을 통한 재원과 BHCIIP를 통해 강화되는 캘리포니아주의 행동건강 확장 체계에 역사적으로 위기 대응, 입원 및 주거 치료에서 가장 빈번히 배제되어 온 자폐 및 IDD 개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20년 11월 Manny Alert Act(매니 경보법, AB 911) 911 신고용 자발적 등록 데이터베이스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매니 경보법을 전면 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며, 여기에는 모든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공공안전응답지점, PSAP), Computer Aided Dispatch Systems(컴퓨터 지원 출동 시스템, CAD) 및 현장 대응 인력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 확보된 자발적 주 단위 등록체계의 구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법집행기관 및 911 파견요원이 무선 긴급경보를 활용하여 IDD가 있는 실종자를 수색하도록 대중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의무화합니다(수영장, 수역 또는 고속도로 확인 안내 포함). 이러한 자원은 무선 전화 요금에 부과되는 주 State Emergency Telephone Number Account(긴급전화번호 계정, SETNA) 이용요금의 소폭 인상을 통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권고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원 조달 방안을 고려합니다.
 - 특히 농촌 지역을 포함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우선 지원 또는 특별 보조금(공동 지역 교육 기회 포함);
 - 무선 전화 요금에 대한 SETNA 이용요금 인상;
 - Proposition 63(발의안 제63호)/Mental Health Services Act(정신건강 서비스법) 기금.

권고사항: 교육

- 각 카운티가 범죄와 관련 없는 911 및 988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게 특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해당 카운티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에 대해 IDD 관련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Medi-Cal Mobile Crisis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Medi-Cal 모바일 위기 대응 교육 및 기술 지원 센터, M-TAC)의 필수 핵심 교육과정에 IDD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국)으로 하여금 치안관 및 응급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안전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센터를 파악하고, 해당 서비스가 없는 지역센터에서의 구축 비용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수령한 후, 주의회는 이러한 서비스를 주 전역에 구축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국에 대한 일회성 예산 배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에는 배회 예방, 긴급 대응, 도움 요청 및 고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캘리포니아주 교육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통해 특수교육 교사가 기능적 안전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기반의 주 전역 안전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발달장애 교육, 연구, 서비스 우수센터, 지역센터, 특수교육 지역계획구역,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및 당사자, 의사소통/행동 전문가, POST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 이러한 기술에는 배회 예방, 긴급 대응, 도움 요청 및 고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도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권리 존중적이며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교육과정은 가능한 경우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지역 치안관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및 특수교육 지역계획구역은 해당 교육과정과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주 전역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입법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팀이 치안관과의 상호작용 방법 및 배회/이탈 대응 방안에 관한 지원, 자원 및 정보를 논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POST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 학습영역 20 및 37의 내용을 검토 및 강화하고, 그 밖에 반복적 숙련이 요구되는 기술 관련 과정의 내용도 검토 및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발달장애서비스국) 및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보건의료서비스국)의 임상 전문가, SB 882 대상 집단 관련 전문기관, 그리고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험을 가진 사람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학습영역 20 및 37 관련 필수 교육시간을 검토하고, 내용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이를 조정합니다.
 - 적절한 경우 각 학습영역 전반에 걸쳐 IDD 및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통합하되, 특히 긴장 완화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IDD 및 정신건강 관련 시나리오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POST 학습영역에 반영하되, 시간, 거리 및 가족 참여 요소를 강조합니다. 또한, 적절한 경우 법집행 대응이 필요한 특정 행동의 원인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와 전략, 그리고 원인에 따라 개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에는 잠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건강 상태를 식별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복합 질환을 가진 개인을 포함하여 SB 882 대상 집단의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검토 및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정신건강 문제의 다양한 유형, IDD, 정신건강 문제와 IDD를 동시에 가진 개인, 그리고 복합장애(예: Deaf Plus)를 가진 개인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다양한 환경에서 상이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SB 882 대상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교육을 검토 및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또는 거주지, 사업장, 개방된 공공장소 등 환경에 따라 상호작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습영역 20 및 37과 SB 882 대상 집단(특히 IDD 관련)에 대한 반복 숙련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POST 인증 강사의 최소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회는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국) 및/또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보건의료서비스국, DHCS) 또는 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국, Cal MHSA)에 SB 882 대상 집단 및 법집행 관련 POST 인증 강사 양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DDS 및/또는 DHCS/Cal MHSA에 대한 이러한

예산 배정에는 정규직 인력 1명과 함께, 현장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강사 또는 패널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제, 간헐적 자문 인력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SB 882 대상 집단과 관련된 반복 숙련 기술 교육에 대해 치안관의 최소 교육시간을 설정합니다.
- 법집행 인력이 SB 882 대상 집단에 속한 성인 및 아동의 ‘배회’ 또는 실종과 관련된 잠재적 행동 특성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POST에 대하여 실종자 대응 및 수사와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영역 전반에 ‘배회’ 행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²
- SB 882 대상 집단의 개인, 보호자 또는 목격자가 관련된 신고를 처리하는 파견요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및 보장하며, 여기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 제시할 질문, 법집행기관 출동 기준 및 사건 분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종자 신고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 관한 신고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발달장애서비스국 및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임상 전문가, SB 882 대상 집단 관련 전문기관, 그리고 당사자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험을 가진 사람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공식적인 권고는 아니지만, 입법자, 법집행기관, POST 및 교육기관이 SB 882 대상 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유망 사례 및 방안입니다.

잠재적 우수 사례: 위기 대응 모델 및 기타 시스템 개입

법집행기관을 위한 사례:

- 지역사회 또는 비법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구성원과 치안관 간에 보다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비긴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예시:
 - 치안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두려움을 완화하며, 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SB 882 대상 집단 구성원을 경찰서로 초청하여 치안관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예: “Meet the Police (경찰관과 만나는 날)” 행사, 감각 친화적 안전 박람회), 치안관이 주간 케어 프로그램, 지역센터 또는 그 위탁기관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공원 등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행사를 조직하고, 치안관과 개인이 함께 활동(예: 버디 지정, 공동 활동 및 게임 등)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 법집행기관과 SB 882 대상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협력 강화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을 구성합니다.
- SB 882 대상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비긴급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초점을 조정합니다. 법집행기관은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부터 SB 882 대상 집단 구성원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 법집행기관이 지역센터 및 카운티 행동건강 부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법집행기관, 지역센터 및 카운티 행동건강 부서 간 양해각서(MOU)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참조 자료: 2 *Did You Know? – Wandering(배회에 대해 팩트 시트)* (2026) 캘리포니아주 치안관 표준 및 교육 위원회, https://www.youtube.com/watch?v=qTbU8u42Dzk&list=PLVY_-7Z6jpM0B-g00hE_qsiE32H-vU1sf&index=30.

-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에 공개되는 CAD 보고서에서 SB 882 대상 집단과 관련된 치안관 주도 상호작용과 서비스 요청에 따른 출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합니다.

법집행기관, 공중보건기관 또는 기타 카운티 기관을 위한 사례:

- 물리력에 관한 민간 감독기구에 정신건강 문제 및 IDD가 있는 개인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 블루 엔벨로프 시스템 또는 랜야드 시스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여 치안관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합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 관련 자료를 지역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 현장 경험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블루 엔벨로프(또는 유사 프로그램)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식별합니다.
 - 블루 엔벨로프(또는 유사 프로그램) 시스템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연구 및 분석 요소를 포함합니다. 연구팀 구성원은 다양한 인구집단 및 지역에 걸친 기준 설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잠재적 우수 사례: 교육

POST 또는 기타 교육기관을 위한 사례:

- POST 및 기타 교육기관은 법집행 교육에서 의사결정 옵션으로 완전 철수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바리케이드 상황 또는 고립된 개인에 대한 철수 절차를 마련한 San Francisco Police Department(샌프란시스코 경찰국) 등 완전 철수 정책을 채택한 기관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³
- POST 및 기타 교육기관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QR 코드, 모바일 앱 및 순찰차 탑재 단말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성문법에 관한 교육 자료, (2) 상황별 모범사례, (3) 조건별 대응 지침, (4) 관련 절차.
- POST 또는 적절한 기관은 중앙집중형 교육 허브 또는 자료실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대상: 법집행기관, 의료 전문가, 비영리단체, 그룹홈 및 지역센터 위탁기관 등 관련 시설.
 - 자료실 구성 내용: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권고사항 및 정책 문안 예시.
 - 접근 방식: 특히 소규모 및 농촌 지역 기관을 위해 대여 가능한 이동식 교육 장비를 포함합니다.
- POST는 제3자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업데이트된 교육을 POST 교육 포털에 연계하여야 합니다. 현장 경험자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을 식별하여 포함시킵니다.
- POST 및 기타 교육기관은 안전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근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트리를 포함한 자기주도형 대화형 교육 모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치안관은 이러한 모듈을 비동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어 농촌 지역 기관이나 다양한 근무 일정 환경에서도 활용이 용이합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에는 치안관이 선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는

3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일반명령 5.24: 철수 절차, 출처: https://www.sanfranciscopolice.org/sites/default/files/2023-06/SFPDDGO_5_24_20230606.pdf를 참조하십시오.

현실적인 의사결정 트리 기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기형 경로는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 조정되며,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의 경우에는 고급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화형 퀴즈 및 이해도 점검과 결합되어, 치안관이 실제 의사결정을 통해 모범 사례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를 POST 포털에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 POST 및 기타 교육기관은 소규모 기관에 대여할 수 있는 주 전역 단위의 이동식 교육 장비와, SB 882 대상 집단 관련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Pro-Forma와 같은 바디캠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법집행기관을 위한 사례:

- 문화 및 지역사회 내 상호작용의 역사와 그것이 갈등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다루는 교육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치안관이 SB 882 대상 집단에 속한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치안관 간 신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관이 표준화된 접근을 위해 POST 교육 포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장려합니다.
- 법집행기관은 브리핑 시 다음과 같은 마이크로러닝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논의하고, 잘된 점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짧은 영상 리뷰를 통합합니다. 예로는 제3자 영상, 유튜브 바디캠 영상, 외부 출처 뉴스 장면, 자체 제작 영상, 타 기관의 주요 사건 사례 및 관련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 법집행기관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상현실(VR) 교육을 확대합니다.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하여 VR 활용을 장려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예: 고글 착용 또는 시뮬레이션 환경 참여). VR 교육은 몰입형 시나리오 기반 경험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능력, 긴장 완화 기술, 상황 인식 및 지식 유지력을 향상시킵니다. 초기 연구 및 시범 프로그램은 특히 고스트레스 또는 복합 상황에서 치안관의 참여도와 지식 유지가 향상됨을 보여줍니다.

법집행기관, 공중보건기관 및/또는 커뮤니티 조직을 위한 사례:

- 치안관 교육의 ‘상호 보완적 측면’으로서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홍보하여, SB 882 대상 집단과 그 가족이 법집행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신건강 문제 및 IDD가 있는 사람을 교육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 교육 과정 자체에 정신건강 문제 및 IDD 당사자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 SB 882 대상 집단이 법집행기관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장려합니다. (1) SB 882 대상 집단의 청소년 및 성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전 교육, (2) 법집행 및 응급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직접지원 인력을 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 핵심 구성 요소:
 - 자기 식별 방법(예: 블루 엔벨로프 또는 랜야드 시스템)을 교육합니다.
 - 교통 단속 또는 치안관과의 상호작용 시 취해야 할 행동을 설명합니다. 지갑에 즉시 손을 넣지 말고, 손을 움직여도 되는 시점을 치안관에게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강조합니다.

- 자신의 스트레스 신호를 관리하고 고압적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개인과 가족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 역할극 및 시나리오 기반 연습을 장려합니다.